

## 중국중재제도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연구

### A Study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China Arbitration System

김 석 철\*  
Suk-Chul Kim

#### 〈목 차〉

- I. 서 론
- II. 중국 중재법의 주요특징
- III. 중국 중재법과 UNCITRAL 모델 법의 비교
- IV. 문제점 및 국제 표준화 방안
- V. 결 론

주제어 : 중국중재, 표준중재, 사회주의 시장경제, 기관중재, 임의중재, 중재심리, 임시조치

\* 경원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 I. 서론

중국의 중재제도는 한국은 물론 세계의 경제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은 경제규모가 크고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국 무역 규모는 2007년 기준 중국으로의 수출이 한국 전체 수출 미화 3천7백1십4만8천9백만 달러 중 22.1%인 미화 8백1십9만8천7백만 달러이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한국 전체 수입 미화 3천5백6십8만4천6백만 달러의 17.7%인 미화 6백3십만2천8백만 달러로서 수출·수입 모두 1위의 국가이다.<sup>1)</sup> 중재제도는 국가간의 무역거래에 대한 분쟁해결제도로서 지속적인 무역거래확대를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므로 한·중간은 물론 중국의 무역확대를 위해서도 중국의 중재제도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중국의 중재제도와 한국의 중재제도는 첫 출발의 목적부터 큰 차이가 있다.

한국 중재의 법상의 첫 출발은 일제 치하인 1912년 조선 민사령 제 13조에 따라 일본 민사소송법의 의용에서 시작되었다. 1945년 해방 후에도 미군정법령 제 21호에 따라 동 일본민사소송법 제 8편의 “중재 수속에 관한 규정”의 효력이 지속되었으며, 1960년 한국 민사소송법 제정 때는 중재에 대한 법적규정이 빠졌다가 1966년 중재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은 독자적인 중재법이 탄생된 것이다.<sup>2)</sup>

한국 중재법의 탄생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정부의 수출 진흥 정책에서 시작 되었다. 외국주재 한국공관이 본국에 한국의 수출품에 대한 무역클레임이 증가, 해결기피, 지연 해결 등 외국기업의 불만이 자주 발생하여 한국의 수출에 장애가 된 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청함에 따라 정부와 상공업계가 중재제도 도입을 서두르게 되었다. 즉, 한국의 중재 제도는 수출 진흥에 목적을 둔 국제 중재 제도였다.

중국은 중화소비에트 노동법<sup>3)</sup>에 의하여 중국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건설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국의 각 성과 시에 국가가 노동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조정을 하는 정부 기구로서 1933년 국내 중재로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1956년에 북경에 중국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를 설립하여 국제섭외중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중국은 14개의 법률과 80여개의 행정법규, 200여개의 지방법규<sup>4)</sup>에 의해 중재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리고, 1970년대 등소평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경제 도입과 개방경제 실시 등 개혁개방 경제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미미하나마 국내적으로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 사이의 계약분쟁과 재산권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국제간의 거래도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상거래에 대한 중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1994,8,31

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주요무역동향지표」, 2008

2) 광영실·김석철, 「국제상사중재론」, 도서출판 두남, p.164~165, 2004.3.20

3) 우광명,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연구” 「중재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p.124, 2006.3

4) 이주원, “중국중재제도의 특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p.116, 2008.12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을 통과시켰으며, 1995.9.1부터 당사자 자유의사에 의한 오늘날의 중재제도가 탄생되었다.

동법의 시행으로 오늘날 중국의 중재기관은 180여개로 증가하였으며 상근직원이 2,000여명이나 되고 2만 여명의 중재인이 있는 국가로 발전하였다.<sup>5)</sup>

중국의 국제중재는 국제적인 경제무역, 운수, 해상분쟁을 의미하며, 국제중재기관은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와 중국해사중재위원회(CMAC)가 있다. CIETAC은 1956년 당시 중국 정부원(현재 국무원)이 민간사회단체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설치한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1988년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CMAC는 1959년 설립되어 CIETAC과 같이 활동하고 있으며 완전히 독립된 기구라기보다는 CIETAC의 해상분쟁전문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독립된 기구다. CIETAC은 설립 당시에는 법률적 제정이 아닌 국가의 행정 법규로 설립하여 중재를 국가행정의 일환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후, 1970년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장려를 하였다. 1987년 뉴욕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88년에는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1991년에는 지금까지의 국내중심 중재에서 처음으로 민사소송법에 섭외 중재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국제중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처음 마련하였으며<sup>6)</sup>, 9개 조항의 제7장 섭외중재에 관한 특별규정이 포함된 독립된 중국 중재법이 1995.9.1부터 시행되면서 국제중재 활성화의 법적인 기반이 구축되었으나 국제적인 신인도를 확보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sup>7)</sup>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중재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인증 받을 수 있는 국제표준화를 이룩함으로써 한국은 물론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과 안전한 교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많이 있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1994년 김병준의 고려대 박사학위논문인 “중국의 섭외중재계약법과 분쟁해결연구”가 있다<sup>8)</sup> 1998년 성백영의 한중법학회 발표논문인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의 내용과 문제점<sup>9)</sup>”, 왕홍송이 2004년 중재연구 제13권제2호에 게재한 “중국중재제도연구<sup>10)</sup>”, 최석범이 2004년 중재연구 제14권제2호에 게재한 “중국국제상사중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sup>11)</sup>”, 김석철이 2005년 중재연구 제15권제2호에 게재한 “칭따오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중재절차 통일화 연구<sup>12)</sup>”, 2005년 중재연구 제15권 제3호에 게재한 이주원의 “중국중재제도의 특징에 관한 소고<sup>13)</sup>”, 2007년 신

5) 于健龍, “중국의 중재제도와 외국중재관정”, 『2008한중일 상사중재 국제학술대회』, 한국중재학회, 2008

6) 우광명,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 연구”, 『중재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6.3

7) 중국 인민공화국 중재법 제7장 제65~제73조 참조

8) 김병준, “중국의 섭외중재계약법과 분쟁해결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4

9) 성백영,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의 내용과 문제점” 한·중 법학회, 1998.

10) 왕홍송, “중국중재제도 연구”, 『중재연구』 제13권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

11) 최석범, “중국국제상사중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 방안” 『중재연구』 제14권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

12) 김석철, “칭따오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중재절차 통일화 연구” 『중재연구』 제15권제3호, 2005

중재, 이주원이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에 게재한 “남북한 및 중국 중재제도의 비교 연구<sup>14)</sup>”, 2008년 5월 중국 CIETEC의 비서장인 우건용이 한국중재학회의 한·중·일 상사중재 국제학술대회논문에서 발표한 논문“중국중재제도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sup>15)</sup>” 등이 있다. 이상의 논문에서는 중국중재에 관한 소개와 중국 중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중재의 국제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보다 진일보한 논문이라는 특징이 있다.

## II. 중국 중재법의 주요특징

### 1. 중국 중재의 목적과 관리형태

#### 1) 중재의 목적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하여 중재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중재기관은 노동자들을 지도·감독하고 불만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중재로서 전국에 중재 기관이 180여개나 설립되는 등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은 북경의 중국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설립이며 심천과 상해에 분소가 있다.

중국은 중국중재법 제1조에서<sup>16)</sup> “경제 분쟁에 대하여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 보장”을 중국 중재의 목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국 중재는 재산의 사회성이 강조되는 사회주의 바탕위의 시장경제 발전 보장으로 사유재산 인정은 최소화하고 있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여전히 국가재산으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중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중국의 기업도 외국 투자기업 외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가단체 등이 운영하는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재산의 임의처분권에는 제한이 있어 자본주의 국가의 중재와는 차이가 있다.

13) 이주원, “중국중재제도 특징의 소고, 『중재연구』 제15권 제3호, 2005

14) 신군재·이주원, “남북한 및 중국 중재제도의 비교 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

15) 于健龍, “중국중재제도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한·중·일 상사중재 국제학술대회』 한국중재학회, 2008.5.

16) Arbitration Law of the People Republic of China, Article 1.

The law is formulated with a view to ensure fair and timely arbitration of economic disputes, reliable protection to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parties concerned and a healthy development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 2) 중재관리 형태

중재관리에는 중재기관이 하는 기관중재와 중재를 관리하는 임의중재가 있다. 기관중재는 전문성이 있는 상설중재기관이 많은 중재인을 보유하고 있어 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중재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재기관이 중재를 관장함으로써 중재기관의 의도에 따라 중재당사자의 의견반영이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앞의 중재는 중재인 선정부터 당사자가 합의하여 진행해야 되므로 중재절차 진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 당사자 의견에 의해 진행되는 장점도 있다.

중국은 중재법에 “중재합의에 선정한 중재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sup>17)</sup>, 중재신청은 중재위원회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8)</sup>

중재의 본래적 가치는 사법상의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아닌 소송 외적 방법으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중재계약을 하고, 분쟁을 해결할 중재인을 선정하여, 자율적인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의 중재가 특정기관에서 하는 것만 인정된다면 임의중재의 가치를 실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 2. 중재의 대상

### 1) 일반중재 대상

중국 중재법상 중재의 대상은 중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涉外중재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규정에 해당 내용은 평등주체인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 사이에 발생하는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을 중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9)</sup> 그러나 혼인, 입양, 후견, 부양, 상속분쟁과 법에 의하여 반드시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행정 분쟁은 중재 대상이 아니다.<sup>20)</sup> 그리고 노동쟁의와 농업 집체 경제조직 내의 농업 도급계약분쟁에 대한 중

17) China Arbitration Law Article 16

An agreement for arbitration shall include the arbitration clauses stipulated in the contracts or other written agreements for arbitration reached before or after a dispute occurs.

An arbitration agreement shall contain the following :

3. The arbitration commission chosen.

18) China Arbitration Law Article 22

In applying for arbitration, the parties concerned shall submit the agreement and the application for arbitration and their copies.

19) China Arbitration Law Article 2

Contractual disputes between citizens of equal status, legal persons and other economic organizations and disputes arising from property rights may be put to arbitration

20) China Arbitration Law Article 3

The following disputes cannot be put to arbitration:

1. Disputes arising from marriage, adoption, guardianship, bringing up of children and inheritance.

2. Disputes that have been stipulated by law to be settled by administrative organs.

재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되어있다.<sup>21)</sup> 상기 규정에서 계약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2005. 12.26 최고인민 법원 심판 위원회 제137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06. 9.8부터 시행된 중화인민 공화국 중재법 적용에 관한 해석에서 계약의 성립, 효력, 변경, 양도, 이행, 위약책임, 해석, 해제 등으로 인한 분쟁을 모두 중재사항으로 인정할 수 있다<sup>22)</sup>라고 해석하고 있어 계약자체의 다툼부터 계약 불이행까지 모두 중재의 대상이 된다.

## 2) 섭외중재 대상

중국 중재법의 섭외중재에 관한 특별규정에서는 섭외경제무역, 운수 및 해사 중 발생한 분쟁은 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3)</sup> 여기서 중국의 섭외중재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 중재법 시행초기에는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지구와 관련된 분쟁으로서 중국 국내도 아니고 외국도 아닌 지역을 섭외지역으로 분류하여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국 내 외국 투자 법인은 중국 내 법인으로 국내 중재 대상으로 해석된 것이 중국 내의 주된 해석이었다. 아직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합당하다는 견해를 가진 법학자가 많다. 그러나 요즘은 섭외에 대하여 넓게 해석하여 일방 당사자가 외국기업인 경우와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지구 그리고 중국내 외국투자 기업들 모두 섭외 중재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중재법에 의한 섭외 중재기관인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중재규칙에서 관할 범위를 ①국제적 또는 섭외적 분쟁사건 ②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기구 또는 대만지구와 관련된 분쟁 ③국내 분쟁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4)</sup> 섭외를 국제와 같이 분류하고 있고 홍콩, 마카오 등은 따로 분류하고 있어 중국내 외국투자기업을 섭외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중국내 투자기업이 많은 한국으로서는 한국 투자기업의 분쟁이 섭외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큰 이슈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21) China Arbitration Law Article 77

The Arbitration of labor disputes and disputes arising from the farm work contract inside the collective agricultural organizations shall be formulated separately.

22) 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若干問題的解釋 第二條 當事人概括約定仲裁事項為合同爭議的, 基於合同成立, 效力, 變更, 轉讓, 履行, 違約責任, 解釋, 解除等產生的糾紛都可以認定為仲裁事項

23) China Arbitration Law Article 65

The provisions in this chapter apply to arbitration of disputes arising from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transportation and maritime matters. Matters not covered by this chapter shall be handled according to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this law.

24)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仲裁規則 第三條 管轄範圍仲裁委員會受理下列爭議案件:

(一)國際的或涉外的爭議案件  
(二)涉及香港特別行政區, 澳門特別行政區或台灣地區的爭議案件  
(三)國內爭議案件

### 3. 중재인의 자질과 선정

#### 1) 중재인의 가치의식

중국의 중재 중에서 북경에 본부를 두고 심천과 상해에 분회를 두고 있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인은 국제적인 가치의식을 갖춘 중재인이 있다. 그러나 180여개의 지역중재위원회의 중재인은 아직 중국식의 중재, 중국식의 가치에 의한 판단으로 외국 기업보다는 관할지역의 중국 당사자 보호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 이는 지역중재위원회의 중재인이 아직 국제적인 가치의식이 약하며, 또한 중국 당사자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상호 보호의식이 강하고, 애국주의 등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식은 미흡한 편이다.<sup>25)</sup>

#### 2) 중재인의 전문지식 부족

지역중재위원회의 중재인은 정부정책 목적에 따른 지도·감독·조정자로서의 역할수행에 쫓겨 전문적인 바탕위에 법률해석과 사실 파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중재인이 부족하며 중재기관 종사자도 중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sup>26)</sup>. 특히, 국제거래에 따른 국제 상관습, 국제협약과 국제 규칙 등에 지식을 갖춘 중재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 3) 중재인 선정

당사자간에 중재인 선정이나 선정방법에 있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와 중재인 선임방법을 합의하고도 어느 일방의 선임절차 불이행으로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인 선정에 문제가 발생된다. 중국 중재법에서는 중재위원회의 주임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sup>27)</sup> 있어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중재인을 중재위원회의 의도에 따라 일방에게 편향되게 선정될 수도 있다. 특히 국제 중재에서는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객관적인 중재인 선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25) 于健龍 전제서 p.76

26) 于健龍 전제서 p.76

27) China Arbitration Law Article 31

Whereas the parties concerned agree that the arbitration tribunal is composed of three arbitrators, each of them shall choose one arbitrator or entrust the appointment to the chairman of the arbitration commission, with the third arbitrator jointly chosen by the parties concerned or appointed by the chairman of the arbitration commission jointly entrusted by the two parties. The third arbitrator shall be the chief arbitrator.

Whereas the parties concerned agree to have the arbitration tribunal composed of one arbitrator, the two parties shall jointly choose the arbitrator or entrust the choice of the arbitrator to the chairman of the arbitration commission.

## 4. 중재심리 및 임시조치

### 1) 당사자 해태의 효력

당사자 일방이 충분한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진술서를 제시하지 않거나 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심리 중 퇴장을 하는 등의 행태에 대하여, 중국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인이 중재신청 후 신청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태만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승낙하는 것으로 취급함이 없이 중재절차를 진행해야 하여 중재판정부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sup>28)</sup>

심리 불출석이나 심리 중 퇴장의 경우는 신청인이 서면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중재판정부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장한 경우에는 중재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궤석으로 되어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sup>29)</sup> 따라서, 신청인이 심리 중에 불리하다고 느꼈을 때 중재판정을 기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심리 중에 퇴장하여 중재를 무용화시킬 수도 있다.

### 2) 중재합의와 법원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권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 조치권은 당사자가 법원에 임시 처분을 구하는 것과, 중재판정부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전자가 보다 넓은 권한으로 본안문제를 보전하기 위한 해당물품의 보전, 증거확보 뿐만 아니라 중재신청 이전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 문 제까지 포함되며<sup>30)</sup> 중재합의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중재 개시전에 필요한 해당 물품보 전, 증거확보, 가압류 등의 처분의 승인을 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

#### 28) China Arbitration Law Article 25

After an arbitration commission has accepted an arbitration application, it shall deliver the arbitration rules and the list of the panel of arbitrators to the claimant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arbitration rules and send the copies of the arbitration application and the arbitration rules and the list of the panel of arbitrators to the respondent.

After the respondent has received the copy of the application for arbitration, the aforesaid respondent shall file a counter-claim with the arbitration commission. After the arbitration commission has received the counter-claim of the respondent, it shall deliver the counter-claim to the claimant within the time limit set in the arbitration rules. If a respondent fails to submit a counter-claim, it does not affect the arbitration proceedings.

#### 29) China Arbitration Law Article 42

Whereas a claimant is absent from the hearing without justifiable reasons after receiving the written notice or withdraws from hearing half way without the prior permission by the arbitration tribunal, it may be regarded as a withdrawal of claims.

Whereas a respondent is absent from the hearing without justifiable reasons after receiving the written the prior permission by the arbitration tribunal, it may give the award by default.

#### 30) 이강빈, "UNCITRAL 모델중재법상 임시적 보호처분의 개정방향" 『중재연구』 제14권제2호, 2004.12. p.80-81



적이다.

중국 중재법에서는 일방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행위 또는 기타원인으로 판정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정집행이 곤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에 신청하고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재산보전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1)</sup> 즉, 중국은 당사자가 중재신청 후 중재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중재위원회는 인민법원에 이관조치토록 되어 있어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중재신청이전에는 법원에 재산보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증거를 인멸 시킬 수 있고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의 도피 등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착오의 경우에도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함으로서 재산보전신청을 억제하고 있다.

### 3) 중재판정부의 임시조치

중재판정부의 임시조치는 중재사건 목적물과 관련증거의 보전, 제3자에의 물품보관, 부패가능품의 신속한 처분 등을 통한 손해방지 등을 위한 조치다.

중국 중재법에서는 일방 당사자는 증거가 멸실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취득하기 어려운 증거는 중재위원회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증거소재지의 기층인 민법원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어<sup>32)</sup> 중재 판정부에는 권한이 없다.

## 5. 중재 판정과 취소

### 1) 중재판정

중국은 중재 판정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야 하며 소수중재인의 다른 의견을 판정문에 기재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의견이 각각이어서 다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장 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판정한다.<sup>33)</sup>

31) China Arbitration Law Article 28

Whereas due to the acts of the other party or other reasons, the arbitration award cannot be or is hard to be executed, the parties concerned may apply for putting the property under custody.

Whereas a claimant has applied for a custody to the property, the arbitration commission shall, according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Law, submit the application of the claimant to the people's court.

Whereas there are errors in the application, the claimant shall compensate to the respondent for the losses arising from the custody to the property.

32) China Arbitration Law Article 46

Whereas evidence are vulnerable to be destroyed or missing and would be heard to be recovered, the parties, concerned may apply to put the evidences on custody : When a parties applies for custody of evidences, the arbitration commission shall submit the evidences of the party concerned to the people's court at the place where the evidences are obtained.

33) China Arbitration Law Article 53

## 2) 중재 판정의 취소

중국 중재법에서는 당사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거로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소재지 중급 인민 법원에 판정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sup>34)</sup>

- ①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 ② 판정사항이 중재합의의 범위가 아니거나 중재위원회가 권한 없이 중재한 경우
- ③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법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 ④ 판정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조된 경우
- ⑤ 상대방 당사자가 공정한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은폐한 경우
- ⑥ 중재인이 해당 사건의 중재과정에서 뇌물수수·부정행위·위법판정을 한 경우
- ⑦ 해당 판정이 사회 공공이익에 위반되는 경우 등이다.

당사자가 판정 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판정문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sup>35)</sup> 인민법원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정취소 또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sup>36)</sup> 인민 법원이 판정 취소 신청을 받은 후 중재 판정부가 다시 중재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정부에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중재할 수 있도록 통지하고 취소절차는 중지한다. 판정부가 중재하는 것을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sup>37)</sup>

---

An arbitral award shall be decided by the majority of the arbitrators and the views of the minority can be written down in the record. Whereas a majority vote cannot be reached, the award shall be decided based on the opinion of the chief arbitrator.

### 34) China Arbitration Law Article 58

If parties concerned have evidences to substantiate one of the following, they may apply for the cancellation of arbitral award with the intermediate people's court at the place where the arbitration commission resides.

1. There is no agreement for arbitration.
2. The matters ruled are out the scope of the agreement for arbitration or the limits of authority of an arbitration commission.
3.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tion tribunal or the arbitration proceedings violate the legal proceedings.
4. The evidences on which the ruling is based are forged.
5. Things that have an impact on the impartiality of ruling have been discovered concealed by the opposite party.

6. Arbitrators have accepted bribes, resorted to deception for personal gains or perverted the law in the ruling. The people's court shall form a collegial bench to verify the case. Whereas one of the aforesaid cases should be found, arbitral award should be ordered to be cancelled by the court.

Whereas the people's court establishes that an arbitral award goes against the public interests, the award should be cancelled by the court.

### 35) China Arbitration Law Article 59

An application filed by the parties concerned for the cancellation of an arbitral award should be sent within six months starting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award.

### 36) China Arbitration Law Article 60

The people's court should rule to cancel the award or reject the application within two months after the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an award is received.

### 37) China Arbitration Law Article 61

After the people's court has accepted an application for the cancellation of an arbitral award and deems it

### Ⅲ. 중국 중재법과 UNCITRAL 모델법의 비교

#### 1. 중재의 목적과 관리형태

구분	중국 중재법	UNCITRAL Model Law
중재의 목적	·국내중심(사회주의 국가건설) ·사회주의 시장 경제 보장	·국제 중심(국제거래활성화) ·사유재산 보장 시장경제
중재관리 형태	·기관 중재	·기관 중재 ·임의 중재

중재제도 도입 목적에 있어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적 목적 달성에 서 등소평의 개혁 개방정책 이후에 사회주의 바탕위에 최소한의 사유권을 인정하는 시장 경제를 접목시킨 국제분쟁해결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섭외중재특별조항을 보장하고 섭외 중재를 전담하는 중국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UNCITRAL Model Law는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국가간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sup>38)</sup>

중재 관리 형태에 있어서는 중국은 중재기관에 의한 기관 중재만 인정되며 사인에 의한 임의 중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UNCITRAL 중재는 기관 중재와 임의 중재가 모두 인정된다.<sup>39)</sup>

#### 2. 중재의 대상

	중국 중재법	UNCITRAL Model Law
일반 중재 대상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 사이에 발생하는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 단, 혼인, 입양, 후견, 부양, 상속 및 행정 분쟁은 제외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과 관련한 국제상사중재
섭외 중재 대상	섭외경제무역, 운수 및 해사 분쟁	

necessary for the arbitration tribunal to make a new award, it shall notify the arbitration tribunal for a new ruling within a certain limit of time and order the termination of the cancellation procedure. In the case when the arbitration tribunal refuses a new ruling, the people's court shall rule that the cancellation procedure be restored.

38) UNCITRAL Model Law Article 1.(Scope of application)

(1) This Law applies to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ubject to any agreement in force between this State and any other State or States.

39) UNCITRAL Model Law Article 2.(Definitions and rules of interpretation)

(a) "arbitration" means any arbitration whether or not administered by a permanent arbitral institution ;

중국의 중재 대상은 계약의 성립, 효력, 변경, 양도, 이행, 위약책임, 해석, 해제 등과 관련한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이다. 섭외중재 대상은 경제무역, 운수, 해사가 대상이다. 중국의 섭외 중재대상과 UNCITRAL 중재대상의 차이는 중국은 토지 등은 국유로서 사인간의 거래에서 계약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중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미국 등 주요국은 혼인·상속과 노동분쟁에 대해서 가사중재, 이혼중재 노동 중재로서 중재가 인정되나 중국은 섭외 중재기관의 중재로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

### 3. 중재인의 자질과 선정방법

#### 1) 중재인 자질

중국 중재법		UNCITRAL Model Law
일반 중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정책의 지도·감독·조정 전문가가 중재인이 됨</li> <li>· 중재 전문성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재인의 국제성</li> <li>· 중재 전문가 중재인</li> </ul>
섭외 중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재 전문성 강조</li> <li>· 외국인 중재인 제도 도입</li> </ul>	

중국 중재는 정부의 지도·감독·조정 등의 행정적 성격이 강하며 중재 전문성과 국제성은 미흡한 편이다. 그러나 섭외 중재기관은 중재의 전문성이나 국제성의 강화를 위해서 외국인 중재인 확대 등을 취하고 있으나 미흡한 편이다.

#### 2) 중재인 선정

중국 중재법	UNCITRAL Model Law
당사자간에 중재인을 합의 선정 못한 경우 · 중재위원회 주임이 선정함	당사자간에 중재인을 합의 선정하지 못한 경우 · 법원 또는 기타 당국에 선정 요청 · 법원 또는 기타 당국은 제 3국 중재인 선정을 배려해야 함

UNCITRAL 표준중재법에서는 법원 또는 기타 당국에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 또는 기타 당국은 단독 중재인이나 3인 중재의 경우 제3중재인의 경우 당사자의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국적을 가진 중재인을 선정함이 소망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재인 선정의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다.<sup>40)</sup>

그러나, 중국은 중재 위원회의 주임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중재위원회 주임의 의도에 달려 있어 객관적 보장이 없다.

#### 4. 중재심리 및 임시 조치

구분	중국 중재법	UNCITRAL Model La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의 중재 신청 진술서 미제출</li> <li>· 피신청인의 중재답변서 미제출</li> <li>· 신청인의 심리 불출석이나 심리 중 퇴장</li> <li>· 피신청인의 심리 불출석이나 심리 중 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재절차 종료</li> <li>· 제출된 증거를 근거로 중재 판정 가능</li> <li>· 중재 철회 간주로 중재 판정 불가</li> <li>· 피신청인 결석 중재로 중재판정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재 절차 종료</li> <li>· 제출된 증거를 근거로 중재 판정가능<sup>41)</sup></li> <li>· 신청인 결석 중재로 중재 판정가능</li> <li>· 피신청인 결석 중재로 중재 판정 가능<sup>42)</sup></li> </ul>

##### 1) 당사자 해태의 효력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하고도 중재신청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과 UNCITRAL Model Law 모두 주장사실과 증거 등이 있기 때문에 중재절차를 종료한다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진술서와 증거를 근거로 중재인의 판단으로 중재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도 동일한 입장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중재심리에 불참하거나 심리 중에 퇴장한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 중국은 중재철회로 간주 되어 중재판정이 불가능하지만 UNCITRAL Model Law는 중재 판정부가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의 고의적인 중재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심리 불출석이나 심리 중 퇴장은 결석 중재심리로 중재 판정을 할 수 있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40) UNCITRAL Model Law Article 11(Appointment of arbitrators) (5)

The court of other authority, in appointing an arbitrator, shall have **연** regard to any qualifications required of the arbitrator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to such considerations as are likely to secure the appointment of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arbitrator and, in the case of a sole or third arbitrator, shall take into account as well the advisability of appointing an arbitrator of a nationality other than those of the parties.

##### 41) UNCITRAL Model Law Article 25. (Default of a party)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if, without showing sufficient cause,

- (a) the claimant fails to communicate his statement of claim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 (1), the arbitral tribunal shall terminate the proceedings ;
- (b) the respondent fails to communicate his statement of claim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 (1), the arbitral tribunal shall continue the proceedings without treating such failure in itself as admission of the claimant's allegations :

##### 42) UNCITRAL Model Law Article 25(Default of party)

- (c) any party fails to appear at a hearing or to produce documentary evidence, the arbitral tribunal may continue the proceedings and make the award on the evidence before it.

## 2) 중재합의와 법원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권

중국 중재법	UNCITRAL Model La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정 집행의 어려움이 예측될 경우 중재 신청 후에 일방이 중재위원회에 신청하고 중재위원회는 인민 법원에 이송함</li> <li>· 신청인의 착오로 피신청인의 손실을 끼친 경우 손해배상 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 일방은 중재 절차 개시 이전이나 진행 중에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 요청을 취할 수 있으며</li> <li>· 중재합의의 경우에는 임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li> </ul>

중재 합의를 한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집행, 해당 물품의 안정성과 증거 보전 등을 위하여 중재 개시 이전에 우선적으로 임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UNCITRAL Model Law는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sup>43)</sup> 중국은 중재 개시 후에 중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제품의 안전과 증거 보전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며 재산 도피로 중재 집행이 방해 받을 수 있다.

## 3) 중재 관정부의 임시보전조치

중국	UNCITRAL Model La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방 당사자는 증거 보전을 중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 위원회는 증거 소재지의 기층 인민 법원에 이송</li> <li>· 증거 확보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방 당사자 요청이나 중재 관정부의 판단으로 임시 보전 조치를 직접 명할 수 있으며</li> <li>· 담보 제공을 요구 할 수 있음</li> <li>· 중재 사건 목적물과 관련 증거보전, 제 3자에의 물품보관, 부패가능 물품의 신속 처분을 통한 손해 방지 등조치 가능</li> </ul>

UNCITRAL 중재법에서는 중재 관정부가 임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일방당사자에게 적절한 담보의 제공도 요구할 수 있다.<sup>44)</sup> 한국중재법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sup>45)</sup>

43) UNCTRAL Model Law Article 9. (Arbitration agreement and interim measures by court)

It is not incompatible with an arbitration agreement of a party to request before or during arbitral proceedings, from a court an interim measure of protection and for a court to grant such measure.

44) UNCTRAL Model Law Article 17. (Power of arbitral tribunal to order interim measur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may, at the request of a party, order any party to take such interim measure of protection as the arbitral tribunal may consider necessary in respect of 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 The arbitral tribunal may require any party to provide appropriate security in connection with such measure.

45) 한국 중재법 제 18조(임시적 처분)

①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중재 판정 부는 피신청인에게 임시적

UNCITRAL 중재법과 중국중재법의 차이는 첫째, 임시처분 대상이 UNCITRAL 중재법은 중재 사건 목적물과 관련증거의 보존 목적물의 안전조치까지 취할 수 있으나 중국은 증거확보조치만 취할 수 있다. 둘째는 UNCITRAL 중재법은 중재판정부가 임시조치 권한이 있으나 중국은 법원에 이송토록 하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

## 5. 중재 판정과 취소

### 1) 중재 판정

중국법	UNCITRAL Model La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결 원칙</li> <li>· 소수 중재인의 다른 의견 기록</li> <li>· 다수 의견이 없는 경우 의장 중재인의 의견대로 판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반수 의결로 판정 결정</li> <li>· 판정문에 서명이 생략된 경우에는 이유가 기재되어야 함<sup>46)</sup></li> </ul>

다수결 원칙은 동일하나 의견이 모두 나누어진 경우에는 중국은 의장중재인의 의견대로 판정할 수 있으나 UNCITRAL은 의장 중재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어느 중재인의 의견에 동의를 하여야만 중재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의장 중재인의 독선을 막을 수 있다.

### 2) 중재 판정의 취소

중국법에서는 증거 위조, 증거은폐, 중재인의 뇌물 수수 등이 취소의 대상이나 UNCITRAL 모델법<sup>47)</sup>은 중재 판정의 집행을 방해 할 수 있는 경우로 악용될 우려도 있어

처분에 갈음하여 제공할 담보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의 신청인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6) UNCITRAL Model Law Article 31. (Form and contents of award)

(1) The award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shall be signed by the arbitrator or arbitrators. In arbitral proceedings with more than one arbitrator, the signatures of the majority of all members of the arbitral tribunal shall suffice, provided that the reason for any omitted signature is stated.

47) Article 34. (Application for setting aside as exclusive recourse against arbitral award)

(1) Recourse to a court against an arbitral award may be made only by an application for setting asi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2) An arbitral award may be set aside by the court specified in article 6 only if:

(a) the party making the application furnishes proof that:

(i) a party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7 was under some incapacity; or the said agreement is not valid under the law to which the parties have subjected it or, failing any indication hereon, under the law of this state; or;

(ii) the party making the application was not given proper notice of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or of the arbitral proceedings or was otherwise unable to present his case; or

(iii) the award deals with a dispute not contemplated by or not falling within the terms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or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beyond the scope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국법	UNCITRAL Model Law
①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① 중재 합의 당사자가 무능력자이거나 준거법 등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② 판정사항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가 권한 없이 중재한 경우	② 중재인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방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법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③ 중재 판정이 부탁 범위가 아닌 경우
④ 판정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조된 경우	④ 중재 판정부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상대방 당사자가 공정한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은폐한 경우	⑤ 이 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이 불가능한 대상의 분쟁의 경우
⑥ 중재인이 해당 사건의 중재과정에서 뇌물 수·부정행위·위법 판정을 한 경우	⑥ 중재 판정이 공공질서에 위배된 경우
⑦ 해당 판정이 사회 공공이익에 위반되는 경우 등	

#### IV. 국제 표준화 방안

이상의 비교검토에서 중국중재의 국제 표준화와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국제성부족, 사유재산인정의 억제, 임의중재금지, 중재인의 지역주의 및 전문지식부족, 중재인선정의 객관성결여, 신청인의 심리불참과 퇴장에 의한 중재판정의 기피, 중재 개시전 당사자의 법원 임시보전조치 불가, 중재판정부의 직권 임시조치 불가, 의장중재인의 중재판정 독선, 법원의 재심사유확대에 의한 중재 판정의 집행 불능화 등으로 요약된다.

중국중재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중국중재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사유재산확대와 국제성강화

중국중재가 국제성이 약한 원인은 사유재산억제를 통한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있다. 시장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유재산억제는 최소화하고 세금제도 개편에 의해 의한 사회주

provided that, if the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can be separated from those not so submitted, only that part of the award which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not submitted to arbitration may be set aside; or

(iv)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or the arbitral procedure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unless such agreement was in conflict with a provision of this Law from which the award is made; or

(b) the court finds that:

(i) 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 is not capable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under the law of this State; or

(ii) the award is in conflict with the public policy of this State.



의를 실현하는 등 스웨덴 등 서구식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 관료는 완전경쟁이나 공정경쟁에 의한 시장 메카니즘을 통한 시장경제주의 개념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세계속의 중국인 의식과 세계인이 모두 하나라는 국제 의식이 바로 중국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 2) 임의중재 인정과 중재의 본질적 가치인정

중국이 기관중재만 인정되고 임의중재가 인정하지 않은 것도 중국의 관료주의 정치 환경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초기에는 효율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긍정적이 요소가 많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 국가 권력에 의한 통치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진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의중재가 인정되어야 한다. 국제간의 문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 3) 중재인의 자질향상

중국 중재기관의 중재인은 전국적으로 20,000명에 달한다. 이들 중재인들은 CIETEC의 중재인을 제외하고는 해당지역의 사람들로 국제 감각이 부족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법률이나 관련분야 뿐만 아니라 중재에 대한 전문성이 약하다. 따라서, 중재인은 국제적 감각, 특정분야의 전문성, 법률적인 지식, 중재에 대한 기본지식 등을 갖춘 중재인의 확보가 요망된다.

## 4) 중재인 선정방법의 객관화

중국의 중재위원회는 국가기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재인 선정도 당사자간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주임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중재인 선정의 신속성이라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역성이 강하거나 자질이 부족한 경우 어느 일방에게 편향된 중재인 선정이 이루어져 중재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UNCITRAL 중재처럼 제3국 중재인 선정에 대한 배려 등 중재위원회가 아닌 법원 등 제3의 기관에서 당사자의견 등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중재인을 선정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5) 신청인의 중재심리 불출석과 퇴장에 대한 중재판정제도화

중국은 피신청인이 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퇴장하는 경우에는 결석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고의적으로 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판정부 허락없이 퇴장한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재판정을 내릴 수 없게 되어 중재합의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 UNCITRAL 중재처럼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퇴장한 경우에도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신청인의 의도적인 중재판정기피를 방지하고 중재합의의

의의를 높여야 하겠다.

#### 6) 중재합의 당사자의 중재 개시전 법원임시조치 신청권 부여

일방당사자가 중재판정 후에 타방당사자의 고의적인 재산도피 등을 방지하여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시조치 방법에 있어 UNCITRAL중재는 중재개시전에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는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개시후에는 중재판정부를 통하거나 중재판정부가 당사자 동의를 받아 법원에 요청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중재 신청 후에 중재위원회를 통하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재산보전을 위한 시기를 놓칠 수 놓쳐 중재집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증거보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법개정이 요청된다.

#### 7) 중재판정부에 임시조치권부여

중재판정부의 해당물품 등의 보존을 취할 수 있는 임시조치권이 제3자에의 보존, 부패가능물품의 신속매각에 의한 손해방지 조치, 증거보존등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가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요망된다. UNCITRAL중재나 한국, 일본, 미국등 대부분의 국가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조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 8) 중재 판정의 집행력강화

중국의 중재판정취소의 대상에 위조증거, 증거은폐, 중재인의 뇌물수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UNCITRAL중재법이나 한국 등은 이를 배제하고 있다. 고의적인 시비로 이러한 사유를 이용함으로써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차단하여 판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중국중재법의 개정이 요망된다.

## V. 결 론

중국 중재의 국제표준화는 중국의 무역신뢰도 증대와 한국의 제1의 무역상대국에 대한 거래안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중국중재법과 UNCITRAL 모델중재법의 비교분석을 통한 중국중재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문제점으로는 국제성 부족, 사유재산인정의 억제, 임의중재의 금지, 중재인의 지역주의 및 전문지식부족, 중재인 선정의 객관성 결여, 중재신청인의 심리불참과 퇴장에 의한 중재판정기피, 당사자의 중재개시전 재산보전 법원임시조치불가. 중재판정부의 임시조치권 행

사불가. 법원의 재심사유 확대인정에 따른 중재판정 집행 불능화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 중재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 1) 사유재산 인정의 확대, 세금제도 개편, 완전 · 공정경쟁에 의한 시장경제실현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 그리고 중국인의 세계인으로서의 의식전환
- 2) 임의중재의 인정으로 관료주의 탈피하여 성숙된 사회발전 달성
- 3) 국제성, 특정분야 전문성, 법률지식, 중재지식을 갖춘 중재인 확보
- 4) 법원 등 제3의 기관에 의하여 제3국 중재인 선정 등 당사자의견 반영제도 확립하여 중재인 선정 객관성 확보
- 5) 신청인의 고의적 불출석과 퇴장에 대한 중재판정을 인정하여 신청인의 고의적인 중재판정기피 방지
- 6) 증거은폐, 재산도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신청인의 중재 개시전 법원임시조치 신청권 인정
- 7) 해당재산보존, 제3자에의 보전, 증거확보, 부패가능 제품의 매각조치 등에 의한 손해 방지 등을 위하여 중재 판정부의 임시조치권 부여
- 8) 위조증거, 증거은폐, 중재인의 뇌물수수 · 부정행위 · 위법판정 등과 같은 중재판정 취소의 대상을 법원의 중재판정취소 재심사유에서 배제함으로써 중재판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개선이다.

이상의 방안이 중국의 현행 정치·경제적 환경에서 비추어 볼 때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으나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중국중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국중재의 국제표준화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이에 대한 연구와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본 논문이 이러한 과제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김병준, 「중국의 섭외 중재계약법과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문, 1994.
- 김상호, 「상사분쟁해결추진을 위한 한,중 중재기관간 협력방안」, 한국중재학회 중국정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2005.5.
- 김석철, “동북아 주요국의 중재법제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3호, 2007.12.

- 곽영실, 김석철, 국제상사중재론 대출판 두남 P.164-165.2004
- 문준조, 「중국의섬외경제분쟁해결제도와사례(중국법연구Ⅳ)」, 연구보고 95-5, 한국법제연구원 1995.
- 신군제,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한,중 조정제도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4.8.
- 신군제, 이주원, “남북한 및 중국중재제도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 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8.
- 성백영,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의 내용과 문제점 고찰”, 한중법학회 제18회 정기학술발표회 논문, 1998.
- 이강빈, “UNCITRAL 모델중재법상 임시적보호처문개정방향”, <중재연구> 제14권 제2호. 2004.12
- 이주원, “중구중재제도의 특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15권제3호, 2005.12.
- 우광명,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연구” 「중재연구」, 제16권 제1호, 2006.3.
- 윤진기, 「중국중재제도」,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 윤진기, “중국중재법상의 문제점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계간 중재, 제29호. 1999년 봄, 양병희 등, 「주식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2006.
- 최석범, “중국국제상사중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12.
- 대한상사중재원, 「외국중재법규집」, 2005.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2000.4.27 대법원 승인.
- 한국무역협회국제 무역연구원, 「주요무역동향지표」, 2008
- 한국중재법, 법률 제6083호, 1999.

### 〈외국문헌〉

#### UNCITRAL Model Law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王長生, “中國 國濟經濟貿易仲裁委員會 第14屆委員會工作報告”, 「仲裁法律」, 2001.2.
- 王存學, 「中國涉外仲裁和訴訟費用手冊」, 中國發展出版社, 1993.
- 王紅松, “중국중재제도”,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2.
- 于健龍 “中國仲裁制度和外國仲裁法” 한국중재학회 2008
- 王承杰 “中國國制商事仲裁制度”, 2008. 한·중·러 국제학술대회, 한국중재학회 2008.7.8
- 中國人民共和國仲裁法

## ABSTRACT

### A Study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China Arbitration System

Suk-Chul Kim

This study lies on build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China Arbitration System for improving a relationship of mutual trust and the safety trade between China and other worldwide countries, especially, South Korea as their one of the biggest trading partner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 and UNCITRAL Arbitration Law. In this analysis, the differences from China and UNCITRAL in arbitration law are like belows ; lack of arbitrator's international mind, the limita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 prohibition of Ad. hoc arbitration, arbitrator's biased nationalism, localism, and their short specialties. a deficiency of the objectiveness for arbitrator's election, a judgement rejection of claimants by using nonattendance and walkout, impossibility of prior and temporary property custody for execution of arbitration award. etc.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China Arbitration, this paper propose as follows:

- 1) Extension of private property right, reorganization of tax system, realization of open competition, exclusion of 'Sinocentrism', globalization of arbitration system
- 2) The abolition of old fashioned bureaucracy with approval for ad.hoc arbitration
- 3) An education for arbitrator's internationalization, specialty, and to promote legal knowledge
- 4) A settlement of the third country arbitrators' selection for reflecting interested party's decision by the court in a selection system of arbitration committee.
- 5) Institutionalization of arbitration judgment that prevent for claimant's avoidance by using a withdrawal and an intentional absent
- 6) A permission of the right of claimant's court custody directly before the begging of arbitration request for the prevention for destruction of evidence and property concealment
- 7) Grant of the arbitration tribunal's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for private property preservation to the third party, proof security, prevention from the loss that selling the corruptible goods

- 8) Improvement of arbitration's efficiency from the exclusion of the obstacles that are forgery, concealed evidence, and arbitrator's bribe taking

Lastly, I hope that this study will serve to promote friendly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d strive for international equilibrium through the achievement of China Arbitration's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 will finish this paper with a firm belief that this will lead to more advanced studies.

**Key Words :** China arbitration, standard arbitration,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organization arbitration, ad. hoc arbitration, arbitration hearing,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